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9나200989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2.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9. 6. 14.

판결 선고 2019. 7. 1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54032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와 A 사이에 2016. 12.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98,611,917원의 한도에서 부인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98,611,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A사이에 2016. 11.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1. 접수 제187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A은 1 2016. 12. 2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 2016. 12. 1. 피고 C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7. 6. 14.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채권자취소소송)를 제기하였다.

다. A은 2017. 10. 13.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8호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고, 2017. 10.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법원은 채무자 A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8. 1. 22.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즉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관리인 A의 수계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 A은 2018. 2. 1.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관리인 A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이후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8. 11. 15. 변론을 종결하고 2019. 1. 17. 관리인 A이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바. 관리인 A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당심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2019. 5. 15.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울회생법원으로서의 이송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자가 아닌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별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채무자회생법제113조, 제59조). 채권자취소소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소송 결과가 채무자의 재산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채무자의 재산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2015다33656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란 반드시 관리인이 새로 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기존의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인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즉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이 적용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제10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4) 한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채권자에 게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데, 소송을 수계한 관리인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고,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이 적용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는데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관리인 A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바, 비록 관리인 A이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으로서 이를 단순히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송수계를 한 관리인 A으로 하여금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사건을 회생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관리인 A에게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바로 각하하였는바, 이는 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관리인에 대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관리인 A이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만을 문제 삼아 실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함에 따라 부인의 소와 실체적 요건이 유사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실체에 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현재의 소송 진행 정도, 집단적, 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부권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법원인 당심에서 부인의 소로 변경된 이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보다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할 절차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소송수계 후 원고인 관리인 A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 및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손철우, 판사 이재신

별지

목 록

1.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대 850㎡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목구조 스텔트지붕1층 창고 계사
 1층 110.25㎡(창고)
 2층 46.8㎡(계사)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호
 연와구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 및 대피소
 1층 135.15㎡(주택)
 지1층 57.36㎡(대피소)
2.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Q 창고용지 1,490㎡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R 전 1,260㎡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S 전 1,130㎡

